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595
----------	-------

발의연월일 : 2021. 6. 4.

발 의 자 : 이학영 · 우원식 · 서동용  
윤미향 · 고영인 · 이용빈  
박홍근 · 전용기 · 임호선  
진선미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사후에 그 집행내역에 관한 통보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전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에 한정하여 보장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협의를요청권이 사문화되며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처럼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가맹본부가 광고나 관측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2조의6).
- 나.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함(제13조제2항).
- 다.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제2항).
- 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37조의2제2항).
- 바. 가맹본부가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41조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제1항 중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한다.

-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약을 정하고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구성원의 자격
5.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규약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구성원의 수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항에 따라 정한 규약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고서(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된 신고서를 말한다)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중전의 제14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에”를 “제1항에”로,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를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협약한다”를 “협약하고, 소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을 “제12조의6제1항·제2항, 제14조의3제2항·제4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12조의6제1항”을 “제12조의6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제6조의5,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까지,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본부가 제6조의5,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까지,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맹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가맹점사업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맹점사업자단체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u>&lt;신 설&gt;</u></p> <p>② 제1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 또는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생략)</p> <p>②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p>	<p>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① ----- ----- ----- -----<u>실시하려는 경우</u> <u>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u>-----.</p> <p>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 ----- -----.</p> <p>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신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약을 정하고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구성원의 자격
5.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규약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구성원의 수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항에 따라 정한 규약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고서(보완을 요구한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

경우에는 보완된 신고서를 말한다)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삭제>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제1항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 요청을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적으로 협의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략)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

-----  
협의하고, 소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  
-----  
-----  
-----  
-----  
-----  
-----  
-----  
-----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33조(시정조치) ① -----  
-----  
-----  
-----  
-----  
-----  
-----  
-----  
-----  
-----  
-----제12조의6제1항·제2항, 제14조의3제2항·제4항-----  
-----  
-----  
-----

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 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과징금) ① -----  
-----  
-----  
-----  
-----  
-----  
----- 제12조의6 -----  
제1항·제2항-----  
-----  
-----  
-----  
-----  
-----  
-----  
-----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 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제41조(벌칙)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6조의5,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까지, 제13조 또는 제14조를-----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

<p><u>&lt;신 설&gt;</u></p> <p>② ~ ④ (생 략)</p>	<p><u>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u></p> <p><u>2.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u></p> <p><u>거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u></p> <p><u>가맹계약을 해지한 자</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